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69호
2. 제 출 자 : 장인홍 의원
3. 제출일자 : 2019. 5. 24.
4. 회부일자 : 2019. 5. 30.

II . 제안이유

- 서울시 사립중등교원의 임용시험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2.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3. 교원 채용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 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9. 6. 4. ~ 6. 12.)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669호로 발의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사립중등교원의 임용시험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교원의 신규 채용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공개전형 절차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같은 공개 전형 방식을 준용하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¹⁾
- 그러나 그동안의 제보와 보도내용에 따르면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에서 교원채용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비리가 오래전부터 은연중에 관행으로 정착되었는바,²⁾

1)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교원임용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함.

2) “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술고는 교장 일가 ‘비리왕국’”(2019.1.27.)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9144&code=11131300&cp=nv> 기사참조.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비리가 19건에 달할 정도로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등의 부정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 채용비리 문제가 악화 일로에 있어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³⁾

[표-1] 신규교원 채용 절차 비교

구 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실시기관	시·도교육감	임용권자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장)
응시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시험방법	· 공개전형 시험 - (1차)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	· 공개전형 -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함
시험과목 및 배점	- (1차) 교육학 및 전공 - (2차)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평가, 교사로서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임용권자가 정함
시험공고	시험 20일전까지 공고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공고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한국사능력검정 3급 결과제출 - (1차합격자) 전학년성적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임용권자가 정함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점수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 이상 선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임용권자가 정함

3) 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연도별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적발 현황(2016년 2건, 2017년 9건, 2018년 8건).

-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위탁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⁴⁾

[표-2] 서울시 관내 사립학교 현황(2018. 4. 1.기준)

구분	법인수	학교수	교원 정·현원			비고
			정원(a)	현원(b)	증 감(c=a-b)	
초	139	38	954	874	80	
중		109	4,071	3,455	616	
고		200	12,919	10,394	2,525	
특수학교		19	765	635	130	
합 계	139	366	18,709	15,358	3,351	

[표-3] 서울시 관내 사립학교 교원시험 위탁채용 현황

학년도	위탁법인 수	선발과목 수	모집인원	비고
2014	4개 법인	5개	11명	
2015	4개 법인	5개	10명	
2016	8개 법인	13개	40명	
2017	9개 법인	11개	29명	
2018	16개 법인	20개	63명	

- 특히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위탁 채용과 관련하여 사립교원의 임용권은 사립학교의 고유권한으로 위탁 채용은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탁 채용을 통해서도 사립학교의 건학 취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들의 국·공립학교 선호로 인해 성적이 낮은 사립학교 응시자들이 사립학교에 지원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서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⁵⁾입니다.

[표-4]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선발 절차

서울시교육청	
일 정	내 용
2018년 07월~09월	○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시험 위탁수요 조사
2018년 09월	○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시험 업무위탁 협약 체결
2018년 09월	○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예고
2018년 09월	○ 교육임용시험 기본계획 수립
2018년 10월 12일	○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포함)
2018년 10월 22일 ~ 10월 26일	○ 공립·사립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2018년 11월 13일 ~ 11월 15일	○ 사립 응시원서 수기 접수(사립학교 법인별)
2018년 11월 24일	○ 1차 임용시험 시행
2019년 01월 02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학교법인 결과통보



사립학교 법인	
2019년 01년 02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학교법인 결과통보
2019년 01월~02월	○ 사립학교(법인별) 2차 시험시행 및 합격자 결정
2019년 03월	○ 최종합격자 신규 임용

※ 2020학년도 위탁선발과 관련하여 교육임용시험 기본계획 수립이 9월에 수립으로 인해 전년도 위탁선발 일정을 참고(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계획안에서 발체).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 채용에 참여하는 사립학교 법인에 1개 법인당 5백만원 이내의 ‘2차 시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학기관 운영

5) 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계획안”에 따르면 2018학년도 위탁선발 제 1차시험 합격선을 공립과 비교한 결과 학교법인별 합격선의 차이가 공립보다 과목에 따라 1.00점~36.99점 낮았음.

평가 시 위탁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립학교 위탁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추진되어온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책무 등 총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채용정보에 관한 공시 권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구성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구성과 조문 체계가 적정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에 관한 의견(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용권자가 채용에 필요한 일반 현황, 공개 전형 과정 및 그 결과, 채용에 관한 주요 변동 사항, 채용과 관련된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

로써 임용 후보자 등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3)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중등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사립학교 임용시험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이해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의 규모 및 예산 지원의 타당성 정도, 타· 시도⁷⁾의 예산 지원 사례 등을 사전에 잘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7)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등과 관련 조례 제정 교육청 :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3개 시·도교육청.

교육청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7330, 2019. 6. 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일부개정]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